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비축물자 무상 방출 근거 마련〉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15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비축물자 무상 방출 근거 마련(안 제29조제6항 신설)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태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7.

다. 회 부 일 : 2025. 10. 2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의 완화로 수요량이 급감하여 정부 비축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정부의 저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적어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비축물자 무상 방출 근거 마련(안 제29조제6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 <u>비축물자 무상 방출 근거 마련</u></p> <p>- <u>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사용기한 등을 고려, 비축물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공익 목적에 한해 비축물자 무상 공급 가능</u></p> |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로<sup>1)</sup>,

알루미늄류, 구리류, 아연류, 연류, 주석류, 니켈류, 희소금속류, 방산물자용 원자재, 재활용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경제안보품목의 11개 품목으로 구분됨<sup>2)</sup>.

현행법은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비축물자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원가, 해당 물자의 수급 및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 판매가격에 따라 비축물자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비축물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3)</sup>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2) 「비축대상물자 고시」(재정경제부고시)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국

비축물자를 이용하려는 자는 비축물자를 인도받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비축물자를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됨.

따라서 현행법상 조달청의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조달청 비축물자 중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최근 수요 부진 및 유통기한 압박에 따라 재고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상방출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비축물자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한다)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용업체의 부도, 파산 및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구체적인 승인 요건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이용업체가 당초 지급한 금액과 재판매한 금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30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①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물류관리비 등 관리에 직접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당 물자의 수급 및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민간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조달청장과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비축물자 구매 대금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비축물자 구매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비축물자의 구매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구매 대금의 납부일로 본다.

⑥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구매 대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스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2020년 3월 정부비축이 결정되어 긴급 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되었음. 당초 목표 비축량은 1억 5,000만장이었으나, 2022년 11월 비축 목표량을 5,300만장으로 조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음.

마스크의 유통기한은 통상 3년으로, 조달청은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비축물량을 구매하여 보관·관리하면서 이를 공공기관에 유상으로 방출하고, 비축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매하여 보충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유지·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재고 순환에 의한 마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음. 조달청의 마스크 방출 실적은 2022년 1억 1,786만장에서 2023년 1,801만장, 2024년 628만장으로 크게 감소함.

이에 조달청은 2024년 12월부터 유통기한 임박 물량에 대하여 구매원가 이하로 할인하여 판매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2026년에는 유통기한 도래로 인한 폐기물량이 발생할 예정임. 조달청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잔여 유통기한이 1년 미만인 마스크는 2,309만장이며, 이 중 2026년 2월까지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총 1,900만장의 마스크를 폐기할 예정임.

이에 개정안은 비축물자에 대한 무상방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통기한이 도래한 비축물자 관리 및 폐기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공익적 수요처에 대하여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의 재고 관리 효율화와 재난발생 시 긴급대응 등을 위해 무상방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비축물자 무상 공급의 사유인 공익적 목적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익적 목적의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법률에 대략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sup>4)</sup>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난 및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 등을 재난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대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둘째, 개정안에 따라 신설하려는 조항의 위치를 현행법상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안 제29조제6항을 신설하여 비축물자의 무상 방출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자 하는데, 현행법 제29조는 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 비축물자 구매 시기 및 수량을 결정하고, 이용업체의 등록 및 재판매 금지 등 비축물자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30조는 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과 대금 납입의무를 규정하여 비축물자의 유상판매 원칙을 법률상 명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비축물자의 유상판매 원칙에 예외를 두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 조문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①<br>~ ⑤ (생략)<br><u>&lt;신설&gt;</u> |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①<br>~ ⑤ (현행과 같음)<br><u>⑥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사용기간, 보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u> |

문의처

02)6788-5152